## 공화국 환경보호법의 중요내용

조용봉

환경보호법에서 규제하고있는 내용들을 잘 알고 환경보호사업을 따라세우는것은 우리 인민이 가장 훌륭한 자연환경속에서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며 잘사는 사회주의강성국 가를 건설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환경보호사업을 숭고한 애국 사업으로, 인민을 위한 사업으로 보시고 이 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환경보호, 자연보호관리사업을 잘하여야 합니다.》

환경보호사업은 조국산천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고 자원을 보호증식시키며 사람들의 건 강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보다 훌륭한 생활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한 중요하고도 책임적인 사 업이다.

오늘 환경보호사업은 어느 한 나라, 어느 한 민족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국 제적문제의 하나로 제기되고있다. 세계적으로 경제와 과학기술이 빨리 발전하며 특히 제국 주의자들이 자연부원을 략탈적으로 채취하고 군수산업과 공해산업을 분별없이 확대하는데 로부터 자연환경이 파괴되면서 륙지의 사막화, 지구의 온난화와 같은 여러가지 변화를 일 으켜 인류의 생존자체를 위협하고있다. 지금 환경보호문제를 중시하는것은 세계적추세로 되고있다.

환경보호사업을 잘하여 사람들의 생존과 활동에 더욱 유리한 자연환경을 마련하는것은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의 본성적요구이다.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로 여기는 우리 나라에서 환경보호사업은 마땅히 최상의 수준에서 진행되여야 하며 여기에서도 우리 식 사회주의의 참다운 우월성이 뚜렷이 나타나야 한다.

공화국 환경보호법은 대기와 물, 토양, 생물을 비롯한 자연환경을 보호관리하는데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들과 방도들을 중요내용으로 규제함으로써 환경보호분야에서 이미 이룩한 성과를 법적으로 공고히 하고 우리 인민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릴수 있는 보다 훌륭한 자연환경을 보장하여주며 후대들에게 더욱 아름다운 조국강산을 물려줄수 있는 법적담보이다.

공화국 환경보호법은 무엇보다먼저 환경보호의 기본원칙과 대상에 대하여 규제하고있다. 환경보호의 기본원칙은 환경보호사업을 우리 혁명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의사와 리익 에 맞게 진행하는데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기준이며 나아가서 우리 당의 환경보호정책의 철 저한 관철을 위한 담보이다.

일반적으로 법에 설정된 기본원칙들은 해당 법에서 규제한 구체적인 법률적문제들을 정확히 해결하기 위한데 지향되며 그에 대한 옳은 집행을 보장하기 위한 사람들의 활동을 규제한다.

공화국 환경보호법에서 규제하고있는 환경보호의 기본원칙은 바로 법에 밝혀진 국가의 환경보호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는 과정에 일관하게 적용되며 환경보호와 관련한 국가기관들과 해당 담당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지침이다.

공화국 환경보호법에서 규제하고있는 환경보호의 기본원칙에는 환경보호의 계획화원 칙, 공해방지대책의 선행원칙, 전인민적인 환경보호관리원칙, 환경보호와 관련한 과학연구 사업원칙 그리고 대기, 물, 토양, 바다의 오염과 소음, 진동, 지반내려앉기, 악취, 오존층파괴, 지구온난화 같은 환경파괴현상을 막고 보다 좋은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환경보호원칙 등이 있다.

공화국 환경보호법은 다음으로 자연환경의 보존과 조성, 환경오염방지에 대하여 규제 하고있다.

자연환경의 보존과 조성사업은 숭고한 애국사업이며 인민을 위한 사업이다.

자연환경의 보존과 조성은 단순한 자연상태를 유지보호하는 사업이기 전에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애국헌신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옹호하고 빛내이기 위 한 사업이다.

공화국 환경보호법은 우선 자연환경의 보존과 조성의 기본요구에 대하여 규제하고있다. 자연환경을 잘 보존하고 조성하는것은 인민들에게 좋은 생활환경을 지어주며 후대들 에게 더 아름답고 문화적인 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사업이다.

그러므로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자연환경을 보존하며 그것을 인민들의 건 강증진과 문화정서생활에 유리하게 꾸리고 잘 보호관리하여야 한다.

공화국 환경보호법은 또한 자연환경의 보존과 조성을 위하여 자연보호구와 특별보호 구를 선정하고 자연풍치와 명승지, 천연기념물들에 대한 보호와 관련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준수해야 할 의무적인 내용들에 대하여 규제하고있다.

국토환경보호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들은 자연환경보호를 위하여 자연보호구와 특별 보호구를 정하고 동식물의 변화, 지형과 수질의 변화, 기후변동 같은 자연환경의 변화상태 를 정상적으로 조사등록하여 필요한 대책을 세우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자연보호 구와 특별보호구에서 자연환경을 원상대로 보존하고 보호관리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금 지하여야 한다.

공화국 환경보호법은 또한 자연풍치와 명승지, 천연기념물을 손상, 파괴하지 말아야 하며 원상대로 보존할데 대하여 규제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에 의하여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가진 명승지들과 천연기념물들이 있는 곳에 인민의 유원지, 휴양지들이 꾸려져 근로자들의 문화휴식터로 리용되고있다.

따라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명승지와 관광지, 휴양지에 탄광, 광산을 개발하 거나 환경보호에 지장을 주는 건물, 시설물을 짓는것과 같은 행위를 하지 말며 동굴, 폭포, 옛성터를 비롯한 천연기념물과 명승고적을 원상대로 보존하여야 한다.

공화국 환경보호법은 또한 자연환경의 보존에서 중요한 문제인 땅의 침하와 자연생태계의 균형을 파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것을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법적의무로 규제하고있다.

지하자원을 개발하거나 지하건설을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들은 땅이 꺼져 환경이 파괴되지 않도록 미리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하며 땅이 꺼져 피해를 받을수 있는 곳에서는 지하수를 뽑아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뿐만아니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야생동물과 수중생물의 서식환경을 파괴하거나 희귀종 및 위기종으로 등록된 동식물을 잡거나 채취하여 생태계의 보호, 생물다양성의 보존과 지속적리용에 지장을 주는것과 같은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며 국가적으로 보호증식하기로 된 동식물은 국토환경보호기관의 허가없이 잡

거나 채취하지 말아야 한다.

공화국 환경보호법은 또한 자연환경의 보존과 조성을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서 문화휴 식터의 건설과 원림, 록지조성사업과 국토환경보호월간사업에 대하여 규제하고있다.

공화국 환경보호법에서는 국토환경보호기관과 도시경영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들이 공원과 유원지를 비롯한 문화휴식터를 곳곳에 꾸리며 도로, 철길, 하천, 건물주변과 구획안의 빈땅이나 공동리용장소에 여러가지 환경보호기능을 수행할수 있는 좋은 수종의 나무, 화초, 잔디 같은것을 심을데 대하여서와 기본철길보호구역밖의 토지리용과 관련한 문제들에 대하여 밝히였다. 그리고 국가에서 정한 국토관리총동원월간, 식수월간, 도시미화월간과 같은 국토환경보호월간에 나라의 국토를 아름답게 꾸리고 환경을 보호하는 사업을 전군중적으로 진행할데 대하여 규제하였다.

공화국 환경보호법은 다음으로 환경보호를 위한 방도에 대하여 규제하고있다.

자연환경보호를 위한 중요한 방도는 환경오염을 방지하는것이다.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우지 않으면 생산활동과 생활과정에 나오는 여러가지 유독성물질과 오물, 오수에 의하여 대기와 땅, 강하천, 바다가 오염됨으로써 사람들의 건강과 동식물의 생존에 커다란 피해를 주게 된다.

환경오염방지에서 중요한것은 우선 공기와 물의 오염을 철저히 막는것이다.

공기와 물은 생명체의 생존과 활동의 원천이며 이것이 없이는 사람은 물론 그 어떤 생명체도 존재할수 없다. 뿐만아니라 사람이 맑고 깨끗한 공기와 물을 마시지 못하고 오염된 공기와 물을 마시면 여러가지 질병에 걸리게 되며 심한 경우에 생명까지 잃게 된다.

공화국 환경보호법은 공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들이 환경보호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건물과 시설물에 가스, 먼지잡이장치와 공기려과장치를 갖출뿐아니라 먼지와 악취 같은것의 류출을 막고 로와 탕크, 배관 같은 시설을 계획적으로 보수정비하는것을 법적인 의무로 규제하였다. 그리고 특수한 기상조건에서의 대기오염방지와 오물의 처리와 관련하여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들사이의 권한과 의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제하였다.

공화국 환경보호법은 수질오염을 막기 위한 문제로서 버림물의 정화, 상수도시설의 정 상적인 보수정비, 먹는 물의 려과소독에 대하여서와 바다, 하천, 호소, 저수지에서의 환경 보호문제, 배에 의한 오염을 막기 위한 문제들에 대하여 규제하였다.

환경오염방지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법에서 규제한 절차대로 화학물질의 생산과 수입, 농약의 보관리용 등을 해당 국가기관의 검사와 등록, 승인밑에서 진행하는것이다.

공화국 환경보호법에서는 기관, 기업소, 단체들이 농약을 비롯한 화학물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려 할 경우 국가품질감독기관과 해당 검정기관의 독성검사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받고 등록하여야 하며 대기, 물, 토양을 오염시키거나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줄수 있는 국가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농약을 비롯한 화학물질은 생산하거나 수입할수 없다고 규제하였다. 그리고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약의 보관, 리용을 정해진대로 하여 유기오염물질이나 중금속과 같은 독성물질이 대기중에 날리여 바다, 하천, 호소, 저수지 같은 곳에 흘러들지 않게 하거나 땅속에 축적되지 않도록 하며 농약을 비행기로 뿌리려 할 경우에는 국토환경보호기관의 승인을 받을뿐아니라 오염도가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토양에는 그것을 제때에 해소시키고 농작물을 심어야 하며 오염된 토양에서 생산한 농산물은 판매, 공급할수 없다는데 대하여 밝히였다.

공화국 환경보호법은 다음으로 환경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와 감독통제를 강화하며 환

경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울데 대하여 규제하고있다.

그것은 모든 사업에서와 마찬가지로 환경보호사업도 국가의 통일적인 지도와 통제밑에서만 성과적으로 진행될수 있으며 법적통제가 안받침될 때에 그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휘할수 있기때문이다.

공화국 환경보호법은 우선 국토관리기관을 비롯하여 환경보호사업을 맡아보는 기관들이 내각의 통일적지도밑에 환경보호사업을 전망적으로, 계획적으로 진행할데 대하여 규제하고있다.

환경보호사업은 사회의 발전과 함께 끊임없이 진행되는 장기적인 사업이다. 이러한 환경보호사업은 개별적인 기관이나 몇몇 사람들의 힘으로 진행할수 없다. 환경보호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자면 국가의 통일적지도밑에 해당 기관들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년차별계획을 세우고 전망적으로, 계획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공화국 환경보호법은 또한 환경을 보호하는데서 감독통제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 규 제하였다.

환경을 보호하는데서 감독통제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 규제하는것은 사회주의사회에서도 아직 사람들의 머리속에 낡은 사상잔재가 남아있는것만큼 교양사업과 감독통제사업을 옳게 배합하지 않고서는 사람들의 책임성과 열의를 높이 발양시킬수 없기때문이다.

감독통제기관들은 환경보호법의 요구대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자연환경을 철저히 보호관리하도록 감독통제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감독통제기관들은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파괴할수 있는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장악하고 환경감시체계를 철저히 세우며 환경오염에 대한 측정사업을 정상적으로 하여 환경오염도 가 환경보호기준을 초과하는 일이 없도록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공화국 환경보호법은 또한 환경을 심히 오염시키거나 손상시킨 기관, 기업소, 단체일 군들과 공민들에게 그 엄중성에 따라 행정적, 법적책임을 지울데 대하여 규제하고있다.

공화국 행정처벌법에서는 환경보호질서를 어기는 행위들에 대하여 경고, 엄중경고, 벌금, 자격정지, 강급, 자격박탈, 중지 또는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줄것을 예견하고있으며 형법에서는 그 엄중성정도에 따라 로동단련형이나 로동교화형에 이르기까지의 형사책임을 가할데 대하여 규제하였다.

우리는 공화국 환경보호법에서 규제하고있는 내용들에 대하여 잘 알고 환경보호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섬으로써 당의 의도대로 우리 나라를 보다 훌륭한 자연환경이 보장된 사회주의문명국으로 빛내여야 한다.